「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1월 5일

나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1월 14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국장 김 영 철

나. 제안이유

○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노동자 쉼터의 원활한 유지·관리를 위한 이용자 준수 사항을 규정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· (신설)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, 급식 지원 등

○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○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· 보조금 지원 근거 명확화

○ 용어 및 문장 정비(안 제4조, 제6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제95조의2
- 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제66조의2
-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이용자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5조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을 ‘예산의 범위 내에서’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산재보험료 및 급식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안 제7조에 쉼터 이용자 준수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쉼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관련부서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5. 토　론　요　지:

- 안 제7조의 제목과 조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,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비가 필요함.

- 새로 신설되는 준수사항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, 이행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·통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, 조례에 규정하기보다 규칙 마련 등을 통해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.

- 이동노동자의 단기 근로 및 잦은 이직 특성을 고려하여,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자를 이동노동자로 정의하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7. 심　사　결　과: 수정가결